

교회세습방지법 제정을 위한 포럼 및 교단별 간담회

교회세습방지법, 어떻게?

■ 일시: 2013년 7월 30일(화) 오후 2시

■ 장소: 청어람 3실

■ 주최: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 www.seban.kr

(회원단체: 감리교 장정수호위원회, 개혁교회네트워크, 교회개혁실천연대, 교회2.0목회자운동,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독교연구원 느헤미야, 바른교회아카데미, 성서한국, 예수살기)

순/서/

사회 | 신동식 목사(빛과소금교회, 기윤실 생활신앙실천운동 본부장)

■ 2:00~2:10 인사 및 취지 소개 | 방인성 실행위원장

■ 2:10~2:50 1부 주제 발제

- 세습방지법 제정의 의미와 과제: 평양노회 헌의를 중심으로
| 조주희 목사(성암교회, 예장통합 평양노회 서기)
- 법률적 측면에서 본 세습방지법: 세습을 둘러싼 법률적 쟁점들
| 강문대 변호사(법률사무소 로그)

■ 2:50~3:40 2부 간담회

- 기장 군산노회, 예장고신 경기노회, 예장통합 평양노회,
예장통합 경남노회 등

■ 3:40~ 질의응답

목/차/

- 발제문 1. | 03 P
- 발제문 2. | 05 P
-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 소개 | 11 P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 www.seban.kr

(150-034)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4가 155-1번지 영남빌딩 205호
e-mail. churchseban@gmail.com t. 02-2068-9489 f. 02-741-2794

■ 발제 1.

세습방지법 제정의 의미와 과제

조주희 목사

성암교회, 예장통합 평양노회 서기

세반연 통계(2013. 7. 3)에 의하면 현재 한국에서 세습이 완료된 교회는 62개, 세습 의혹이 제기된 교회는 22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세습 문제가 교회 내의 문제의 범위를 넘어서 사회의 중요한 관심사가 되었으며 사회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회 안의 논의들 중에는 긍정적인 측면에서의 찬성의 이론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교회 내에서도 세습은 건강하지 못한 것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이런 상황을 반영하여 감리교와 기독교장로회는 교단적으로 세습을 반대하는 입법을 한 바 있습니다.

먼저 용어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부족했던 것은 지적할만합니다. 교회에서 지도력이 담임목사의 자녀로 이양된 것에 대하여 세습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교회 세습이라는 용어 속에서는 교회를 하나의 개인의 왕국으로 전제하는 편견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직위를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 자체가 왕국에서나 일어나는 일이라고 지적을 할 수는 있겠으나 모든 상황을 획일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많은 무리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세습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해야 하는가를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용어의 적절성에 관한 문제는 있으나 세습이 한국교회 전체적인 측면에서 교회의 건강함에 대하여 부정적인 현상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물론 담임목사직 세습에 관한 긍정적인 측면에 대한 이론이 없지 않습니다. 교회의 지도력의 안정적 이양, 후임 선택에 있어서 자녀는 무조건 무자격한 것으로 물고 가는 문제(누구나 보다 적합성에 기준을 두어야 한다는 주장), 선정방식이 타당하면 목회자의 자녀도 포함이 가능하다는 주장, 목회자 세습에 대한 비판이 목회적 혹은 교회적 차원이 아니라 사회학적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긍정적인 차원을 부각시키는 이론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습으로 인한 부작용들이 여기저기서 보고되고 있는바 현실만 보아도 그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담임목사직 세습에 관한 비판이 쏟아지는 것은 교회를 허물기 위한 측면과는 전혀 다른 입장이라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목회 세습의 반대의 목소리 중심에는 한국 교

회가 건강하기 바라는 의지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 세습의 문제에 대한 검토는 매우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신학적 측면, 역사적 측면, 윤리학적 측면, 사회학적 측면 그리고 일반 사회 여론까지를 망라하는 분야들에서 심도 있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연구와 논의들을 종합해 보면 세습을 타당하게 뒷받침할만한 근거보다는 세습의 문제를 지적할 수 있는 근거들이 보다 분명한 것이 사실입니다.

또 하나 간과할 수 없는 문제 중의 하나는 담임목사의 자녀들이 아닌 목회자들과 신학생들의 좌절감입니다. 세습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자신들의 기회가 박탈당하고 있는 것에 대한 비판이 적지 않습니다. 신학대학교 안에서도 세습 가능한 환경의 학생들과 그렇지 못한 학생들 간의 갈등 또한 무시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현실적인 면만 고려하면 일부 목회 세습의 타당성을 전혀 발견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극소수의 타당성이 한국 교회 전체적인 측면에서의 건강함을 위한 결단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성이 약하다고 봅니다. 뿐 만 아니라 교회는 이 세상을 향해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을 향하여 외치고 세워가야 하는 선교적 사명을 가진 공동체임을 인식하고 있다면 세습의 비판에 사회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다고 부정적인 측면으로 바라볼 일은 아님에 틀림없습니다. 게다가 우리 사회가 가진 특수한 상황을 고려할 때 대승적인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담임목사직 세습을 정죄와 비난의 시각 일변도로 바라보는 입장에서 한국 교회의 건강함이라는 목표를 두고 대안을 세우기 위한 노력들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 발제 2.

법률적 측면에서 본 세습방지법 - 목회자 지위 세습을 둘러싼 법률적 쟁점들 -

강문대 변호사

법률사무소 로그

1. '교회 세습' 현상의 등장

가. 세습의 의미

- '세습'이라는 용어는 법률상 용어가 아님. 우리 법률상 '세습'이라는 용어는 사용되고 있지 않음.
- '세습'은 혈연관계에 있는 비속이 존속이 차지하고 있던 어떤 '지위'를 존속의 '퇴임' 또는 '사망'시에 '승계'하는 것을 일컫는 것임.
- 세습은, 혈연관계 그 자체를 원인으로 하여 당연히 지위를 승계받는 '직접 세습'과 별도의 절차를 거치기는 하지만 혈연관계가 가장 큰 고려 요소로 작용하는 '간접 세습'으로 구분할 수 있음. 현대 사회에서 전자와 같은 '직접 세습'은 거의 찾아볼 수 없음.
- '간접 세습'의 경우 별도의 절차를 거친다는 점 때문에 '세습'이 아니라는 반론이 있을 수 있지만 '간접 세습'에 있어서도 혈연관계가 승계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끼치고 있으므로 '세습'으로 평가해도 무방함.
-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을 때 상속인이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를 이전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세습과는 구분됨

나. '교회 세습'의 의미

- 일반적으로 교회를 세습한다는 말이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이는 정확한 표현이 아님. 교회는 교인들의 총유 재산으로서 세습될 수 있는 대상이 아님.
- 일반적으로 말하는 '교회 세습'의 정확한 표현은 '목회자(=담임목사)의 지위의 (간접) 세습'임.
- 그 점을 상술하면, '교회 세습'이라고 하는 것은 '목회자의 지위'를 혈연적 관계를 이용하여 형식적인 별도의 절차를 거친 후 승계하는 것을 일컫는 것임.

2. 세습 금지에 관한 일반 법률상의 근거와 타당성

가. 관련규정

<헌법>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제13조 ③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민법>

제56조(사원권의 양도, 상속금지)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다.

제997조(상속개시의 원인)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상속세 세율) 상속금액에 따라 최대 50%까지 상속세율 적용

나. '직접 세습'의 금지

○ 일반 법률상 혈연관계에 대해 인정되고 있는 것은 '재산'에 대한 '상속'뿐임. 즉,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을 때 상속인에게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가 이전되는 제도만이 인정되고 있음.

- 그런 경우에도 상당한 정도의 상속세를 부담케 하여 부의 대물림으로 인한 차별을 금지방지하고 있음.

○ 일반 법률상 혈연관계와 관련한 '지위'의 '승계'는 인정되지 않고 있음. 우리 헌법에는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의 인정과 창설을 금지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데, 지위의 승계의 인정은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의 인정과 창설로 연결될 수 있으므로, 그러한 행위는 헌법으로 금지된다고 할 수 있음.

- 한편, 우리 헌법에는 친족의 행위로 인한 불이익한 처우를 금지하는 규정도 마련해 놓고

있는데, 그 규정의 취지를 확장하면 친족의 행위로 인해 이익을 얻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이처럼 일반 법률상으로는 ‘직접 세습’은 명시적으로 금지되고 있고, 근대화를 거친 나라들 중 ‘직접 세습’을 옹호하는 입장은 찾아보기 힘들.

다. ‘간접 세습’에 대한 규율

- 일반 법률상 ‘간접 세습’을 규율하는 규정은 없음.
 - 즉, 지위를 승계함에 있어 별도의 절차를 거친 이상 그 이면에 혈연관계가 주된 고려 요소로 작용했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의 효력을 부정하는 규정은 없음.
- 따라서 단체의 대표자의 지위의 승계에 ‘혈연적 요소’를 어떻게 차단할 것인지 및 만약 ‘혈연적 요소’가 고려됐을 경우 그 결과의 효력을 인정할지 여부는 단체 자치의 영역에 속하는 것임.

3. 세습에 관한 성서와 교회법상의 근거와 타당성

가. 복음서의 가르침

- “누가 내 어머니이고 누가 내 형제들이냐?”(마태복음 12:48, 마가복음 3:33, 누가복음 8:20)
 - 신약성서 어디에도 생물학적인 혈연과 영적 전승 사이의 관련성을 인정하고 있는 내용이 없음.

나. 각 교단의 헌법

- 각 교단의 헌법들 중 목회자의 자격으로 전임 목회자와의 혈연적 관계를 명시하고 있는 규정은 없음.
 - 이에 비추어 보면, 교회 헌법의 창시자들은 목사 지위의 세습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음.

다. 검토 의견

위와 같은 내용만을 놓고 보면 성서와 교회헌법은 목회자의 지위가 혈연관계를 매개로 승계되는 것을 정당한 것으로 평가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음.

4. '간접 세습'을 가능하게 하는 교회 헌법상의 규정들

가. 문제점

- '직접 세습'을 인정하고 있는 교회 헌법은 하나도 없음.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간접 세습'은 널리 행해지고 있음.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성서와 교회헌법은 목회자의 지위가 혈연관계를 매개로 승계되는 것을 정당한 것으로 평가하지 않고 있는데도 이런 현상이 광범위하게 퍼져 나가고 있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음.
-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교회 헌법에 그런 현상을 막을 수 있는 장치가 미비하기 때문임. 그 점을 상술하면 아래와 같음.

나. 목사 청빙시 혈연관계 배제 규정의 미비

- 작년에 개정된 감리교단의 헌법을 제외한 다른 교단의 헌법들 중 목사 청빙시 전임 목회자와 혈연관계에 있는 사람을 배제한다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는 헌법은 없음.
 - 그렇게 된 이유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교단 헌법의 창시자들이 그런 문제에 대한 인식이 아예 없었기 때문임. 그래도 형식적으로는 혈연 배제 규정이 없는 관계로 혈연관계에 있는 자가 청빙의 대상으로 지목되어도 이를 막을 방법이 없음.
- 작년에 감리교단은 '교리와 장정'을 개정하여 '부모가 담임자로 있는 교회에 그의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는 연속해서 동일 교회의 담임자로 파송할 수 없다'라는 내용의 조항을 포함시켰음.
 - 세습을 금지하려면 이처럼 교단 헌법에 후임 목사의 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을 둘 필요가 있음.

다. 노회의 목사 청빙의 승인시 제한 규정의 미비

- 장로교단에서 개별 교회가 목사를 청빙하고자 할 때에는 노회의 승인이 있어야 함. 그런데 노회가 목사 청빙을 승인할 때 그에 관한 제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
 - 그에 따라 혈연관계에 있는 사람이 후임으로 청빙되어도 노회가 그 승인을 거부하지 않고 있음.
- 목사 세습의 금지는 교단 헌법으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그렇게 하기가 어렵거나 시일이 많이 걸릴 경우에는 각 노회가 그런 취지의 결의를 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음.
 - 즉, 목사 청빙의 승인시 혈연관계에 있는 사람을 배제한다는 내용의 노회 규정을 마련하거나 그런 결의를 해 놓는 방식을 통해 세습을 방지할 수도 있음.

라. 임시목사와 부목사의 청빙을 제직회 결의만으로 가능하게 되어 있음

- 장로교 통합 교단을 비롯한 많은 교단들의 헌법에 임시목사나 부목사를 청빙하는 경우에는 공동의회 결의 없이 제직회 결의만으로도 가능하게 규정되어 있음.
- 그에 따라 전체 교인들의 동의 없이 자녀를 우선 임시목사나 부목사로 청빙해 놓고 추후 위임목사로 청빙하는 경우가 있음.
- 자녀를 임시목사나 부목사로 청빙하는 의도가 명백하므로 그에 대해서도 제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마. 과거 세속에 대한 해결 방안의 부재

- 최근 장로교 통합 교단에서 세습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헌법 개정안이 논의되자 서둘러 세습을 추진하는 교회가 늘고 있다고 함.
- 감리교단의 경우에도 세습 금지 법안이 통과되기 전에 이미 세습을 완료한 교회들이 많았다고 함.
- 세습 금지 규정을 마련함에 있어서는 과거 세속에 대해서도 적절한 해결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 일정 기간을 유예해 주고 담임직을 사임하게 하거나 노회가 주도하여 신임 투표를 다시 하게 하거나 하는 방안 등이 있을 수 있음.

5. 세습을 둘러싼 법률적 분쟁의 유형

가. 세습 옹호 교인과 세습 반대 교인의 갈등

- 교회가 세습을 시도할 경우 세습을 옹호하는 교인과 세습을 반대하는 교인 사이에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태반임.
- 반대파의 경우 피켓팅, 선전물 배포 등을 통해 세습의 부당성을 주장할 수밖에 없는데, 옹호파는 그러한 행위를 명예훼손 및 교회 내의 질서 위반으로 주장하면서 권징을 시도함.
- 그럴 경우 반대파는 더 극렬히 그에 저항하면서 급기야는 각자 예배를 따로 드리는 상황에 이르게 됨. 그럴 경우 교회의 분열을 피할 수가 없게 됨.

나. 전임 담임목사(=아버지)의 비위행위의 은폐와 방치

- 세습이 이루어질 경우 후임 목사는 전임 담임목사의 비위행위를 은폐하거나 드러난 비위행위를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가 흔함.
- 인천의 모 교회의 경우 전임 담임목사의 비위행위가 법원의 판결에 의해 드러났는데도 후

임 목사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법원의 판결이 잘못된 것인 양 호도하고 있음. 교회와 같은 비법인사단에 있어서는 회사와 같은 ‘대표소송’이 인정되지 않고 있어 교회가 입은 손해를 회복할 수단이 없는 상황임.

- 이런 사례를 보면, 전임 목사가 자신의 비위를 은폐하는 수단으로 세습을 활용할 가능성이 커 보임.

다. 원로목사(=아버지)에 대한 지나친 예우로 인한 갈등

- 세습이 이루어질 경우 전임 목사는 원로목사로 추대될 것인데, 전임 목사가 자신에 대한 대우를 과도하게 하거나, 후임 목사가 전임 목사에 대한 대우를 과도하게 하는 경우가 자주 발견되고 있음.
- 이런 상황도 교회 내의 갈등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라. 세습 승인 후 교인들의 반발에 따른 갈등

- 세습이 이루어질 당시에는 전임 목사와의 관계 등으로 세습을 승인한 교인들이 추후 세습을 문제 삼으면서 후임 목사에게 퇴임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교회 내에서 갈등이 발생할 수 있음.
- 후임 목사의 경우 적법할 절차를 거쳤다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순순히 물러나지 않을 가능성이 큼.
- 서울 강서구의 모 교회에서 이런 일로 목사와 교인들이 수 년 간 대립하고 있음.
- 그렇기 때문에 세습 금지 규정을 신설할 때에는 과거 세습에 대한 해결 방안까지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5. 결론

교회 세습은 목회자의 지위의 세습을 의미하는데, 성서와 교회법 어디에도 목회자의 지위의 세습을 정당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지 않으므로, 그러한 세습은 직접 세습이든 간접 세습이든 허용되어서는 안 됨. 교회 세습은 선교 사업에 엄청난 장애를 초래하는 암적 요인임. 현재 교단 헌법에 교회 세습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데 교회 세습을 막기 위해서는 교단 헌법을 개정하거나 각 노회에서 청빙 승인을 거부한다는 결의를 해야 함.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세습을 둘러싼 교회 내 갈등은 계속 증폭될 수밖에 없으므로 현재 시점에서 특단의 조치가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음.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이하 세반연)는 한국교회의 세습이 교회갱신을 위해 풀어야 할 시급한 과제임을 알리며, 교단마다 세습금지를 위한 입법운동을 목표로 교회리더십 교체의 바람직한 방향제시와 건강한 청빙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교회개혁실천연대,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바른교회아카데미가 최초 제안하여 2012년 11월 2일에 출범한 연합단체입니다.

세반연은 출범이후 좌담회와 학술 심포지엄을 통해 교회세습반대운동의 대중적·신학적 지평을 넓혀왔으며, 목회자와 성도,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세습에 대한 인식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연구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반연은 개별적으로 진행되는 교회세습에 대한 상담 및 대응운동 전개하며 한국교회의 공공성에 위배되는 개교회 세습을 반대하는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반연은 주요교단 노회를 대상으로 2013년 정기노회에서 '세습방지법' 현의안이 의결되고, 총회에서 통과되도록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공교회 차원의 세습방지를 통해 한국교회의 대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교회정관이 있는 개교회를 대상으로 교회정관에 세습금지 내용을 넣어 개정하는 운동을 전개할 계획에 있으며, 교회세습과 관련된 자료를 총 정리한 단행본을 출간하여 대중에게 보급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반연의 회원단체로는 감리교 장정수호위원회, 개혁교회네트워크, 교회개혁실천연대, 교회2.0목회자운동,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독교연구원 느헤미야, 바른교회아카데미, 성서한국, 예수살기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조직구성

- ① 고 문 : 김북경 목사(전 에스라성경대학원대학교 총장), 손봉호 장로(서울대 명예교수), 이만열 장로(전 국사편찬위원장), 이형기 교수(장신대 명예교수), 홍정길 원로목사(남서울은혜교회)
- ② 공동대표 : 김동호 목사(바른교회아카데미), 백종국 교수(기독교윤리실천운동), 오세택 목사(교회개혁실천연대)
- ③ 지도위원 : 강영안 교수(서강대), 박은조 목사(은혜샘물교회), 이문식 목사(산울교회), 전재중 변호사(법무법인 소명), 정주채 목사(향상교회), 황광민 목사(석교감리교회)
- ④ 회원단체 : 감리교 장정수호위원회, 개혁교회네트워크, 교회개혁실천연대, 교회2.0목회자운동,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독교연구원 느헤미야, 바른교회아카데미, 성서한국, 예수살기
- ⑤ 실행위원장 : 방인성 목사(함께여는교회)
- ⑥ 사무국 : 교회개혁실천연대

회 원 단 체

감리교 장정수호위원회

주소 충청남도 당진시 정미면 산성 100-4 산성감리교회
전화 043-353-2220 이메일 jbc209@hanmail.net

개혁교회네트워크 cafe.daum.net/reformingchurch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419
전화 010-3293-3392 이메일 kairos512@naver.com

교회개혁실천연대 www.protest2002.org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4가 155-1 영남빌딩 205호
전화 02-741-2793 팩스 02-741-2794 이메일 protest@protest2002.org

교회2.0목회자운동 cafe.daum.net/church2.0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54-2 청진빌딩 4층 405호
전화 070-7523-1563 이메일 vmschoi@gmail.com

기독교윤리실천운동 www.cemk.org

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1가 217 세대빌딩 401호
전화 02-794-6200 팩스 02-790-8585 이메일 cemk@hanmail.net

기독교연구원 느헤미야 www.nics.or.kr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동 180-2 에이원빌딩 2층
전화 070-8260-0208 팩스 02-323-0208 이메일 nics@nics.or.kr

바른교회아카데미 www.goodchurch.re.kr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남산동 2가 19-8번지 청어람
전화 02-777-1333 팩스 02-319-1103 이메일 gcacademy@hanmail.net

성서한국 www.biblekorea.org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4가 155-1 영남빌딩 205호
전화 02-734-0208 팩스 02-734-0209 이메일 bible-korea@hanmail.net

예수살기 www.withjesus.or.kr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교남동 75번지 2
전화 02-747-3191 팩스 02-6935-1919 이메일 jesusalgi@gmail.com